

의안번호	제 25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4월 10일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
----------	-----

발의연월일 : 2023년 4월 10일
발 의 자 : 박진희,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변종오, 유재목,
이의영

1. 제안이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통학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도지사의 통학로 지정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주정차금지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5. 어린이 통학로 내 노상주차장의 폐쇄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 차량진입 제한
7.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
8.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9.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시장·군수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요청)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금지 요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관한 안내와 단속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10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15., 2014. 7. 16., 2016. 5. 2., 2020. 3. 25., 2022. 4. 20.>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 6. (생략)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시설 설치·개선 및 정비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 결과

- 산출과정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2,675백만원 소요

나. 재원조달방안(1년간 4,535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도비 1,952백만원, 시군비 1,952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 도비 299백만원, 시군비 299백만원
- 교육 강사수당 등 : 도비 33백만원

